

## 유아원 특수교육 주요 용어 및 약어

**조정(Accommodations):** 장애 학생들에게도 동등한 학습 및 평가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구 및 절차. 장애 학생에게도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조정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뉩니다:

- 제시 (예: 지시문 반복);
- 답변 (예: 말하는 대신 손으로 가리키기 등);
- 시간/스케줄 (예: 연장 시험 시간, 잤은 휴식시간 등);
- 환경 (예: 특수 조명, 선호하는 자리 등).

**연례 목표:** IEP에 기재된 아동이 1년의 기간 동안 장애와 관련된 분야에서 달성하도록 기대되는 목표.

**연례 검토:** IEP 팀 회의에서 각 학년도에 최소 1회 완성해야 하는 학생의 특수교육 서비스 및 진척의 검토. 특수교육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변경이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유아원 학생의 경우 이 절차는 유아원 특수교육 위원회(CPSE)에서 담당합니다.

**지원 테크놀로지 기기와 서비스:** 지원 테크놀로지 기기란 장애아동의 기능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하거나 발달시킬 수 있는 기계, 물건 또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예. 통신기기, FM유닛, 컴퓨터 사용). 지원 테크놀로지 서비스는 장애 아동이 지원 기술을 선택, 확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아동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 테크놀로지와 서비스는 아동의 IEP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행동 중재 계획 (BIP):** 기능행동평가 (Functional Behavioral Assessment: FBA)을 바탕으로 최소 문제 행동의 설명, 문제 행동 발생 이유에 대한 전체 및 세부 가정과 긍정적 행동 지원, 전략, 지원을 포함하는 중재 전략, 프로그램 조정, 문제 행동을 다루는데 필요한 보충 지원 및 서비스를 포함하여 문제 행동에 대처하는 계획.

**Committee on Preschool Special Education (CPSE):** CPSE는 3-5세의 유아원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절차를 담당합니다. CPSE는 아동이 유아원 서비스를 받는 장소와 관계 없이 거주하는 학군의 가정을 지원합니다. 뉴욕시에는 10개의 CPSE가 있습니다. 각 CPSE는 더 큰 특수교육 위원회 (CSE) 담당실에 소속됩니다. 위원장이 CPSE를 포함하여 담당실을 관장합니다. CPSE 연락 정보:

<http://schools.nyc.gov/Academics/SpecialEducation/ContactsResources/cse.htm>

**동의:** 동의는 반드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하며 학부모의 서명을 받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IPT팀에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동의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학부모는 반드시 선호하는 언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고자 하는 활동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완전히 전달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학부모는 반드시 공개되는 자녀의 기록 및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통보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해당되는 경우 자녀가 받게 되는 테스트 및 테스트가 실시되는 장소에 대한 정보 제공이 포함됩니다.
- 부모님은 반드시 동의하는 활동에 대해 이해하고 서면으로 동의해야 하며;
- 반드시 부모님께서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이며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동의 철회를 하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동의를 한 후와 동의가 철회되기 전에 발생한 조치를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분류 제외:** IEP팀에서 학생이 더 이상 특수교육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

**적법 절차:** 소개, 평가, 배정 절차 중 학부모, 학생 및 교육청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법적 절차

**조기 중재 (EI):** 뉴욕시 보건부 하의 조기 중재 (EI) 프로그램은 장애 또는 발달 지연을 가진 아동의 가정을 출생부터 3세까지 지원합니다.

**자격:** 유아원 아동은 인지, 언어, 소통, 적응, 사회성, 감성, 운동능력에 상당한 지연을 보이거나 본 규정서에 명시한 기타 범주를 충족하는 경우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가집니다.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유아원 아동은 IEP에 "장애를 가진 유아원 학생"으로 분류됩니다.

**무료 적절한 공립 교육 (FAPE):** 공공 감독 및 지시에 따라 학부모에게 청구하지 않고 공공 비용으로 제공되는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

**기능적 행동 평가 (FBA):** 기능 행동 평가(functional behavioral assessment: FBA)는 학생이 학습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이유와 이러한 행동과 환경과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평가입니다.

**보건 서비스:** 학교 수업 중 양호교사 또는 보건 전문가의 도움을 요구하는 의료적 및/또는 보건 관련 필요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관련 서비스. 음식 먹이기, 보행 도움, 흡인, 도뇨관 등의 서비스.

**청각 교육 서비스:** 말하기, 읽기, 청각 교육과 의사교환 시 이를 수용하고 표현하는 방법의 향상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된 서비스.

**개별교육 프로그램 (IEP):** IEP는 아동이 특수교육 서비스 대상임을 기술하고 아동의 독특한 요구에 맞는 적절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의 계획을 공식화 하는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아동에 관한 특정 정보와,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 아동의 현재 학습수행도 및 한 학년도에 성취할 수 있는 목표;
- 카운셀링, 언어, 작업, 물리치료, 보조교사 지원, 지원 테크놀로지, 행동 중재 서비스 등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 비장애 학생 및/또는 주류 기회 참여;
- 서비스 시작일, 서비스 제공 빈도, 제공 장소 및 제공 기간
- 아동의 진척을 측정할 방법

**장애인 교육 개선법 (IDEIA):** 장애 학생에게 최소한으로 제한적인 환경에서 3세부터 21세가 되는 해 또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고 졸업할 때까지 무료 적절 공립 교육 (FAPE)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연방법.

**제한을 최소화한 교육환경(LRE):** LRE는 장애를 가진 학생이 장애가 없는 또래들과 가능한 한 최대한 함께 교육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 학생들을 특수 학급, 별도 학교에 배정하거나 또는 기타 일반교육 환경에서 제외하는 것이 장애의 성격이나 심각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과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교육적 성과를 보일 수 없을 때만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한을 최소화한 교육환경은 각 아동마다 다릅니다.

**관리 필요:** 학생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성인의 감독 및 기타 필요한 환경적 변경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IEP에 명시됩니다.

**변경:** 교과과정 변경사항을 설명합니다. 조정은 학생이 장애로 인해 제한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방식 또는 절차를 조정하는 것을 뜻하지만 변경은 난이도 및/또는 학습량에 대한 전반적인 변경을 말합니다.

**작업 치료:** 아동이 모든 교육 활동에서 소근육과 구강근육 기능을 포함한 적응력 및 구조적인 기능의 회복과 유지, 향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방향성 및 이동 서비스:** 아동의 공간 인지도와 주변 환경 이해도를 높이고 위치와 이동 경로를 결정, 유지 및 다시 찾는 데 감각 (예. 소리, 온도, 진동)을 통해 접한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물리 치료:** 아동의 전반적인 움직임 향상, 보행, 균형과 교실, 체육관, 화장실, 놀이터, 계단 및 교실 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의 조화와 같은 활동의 유지, 개선과 기능 회복을 위한 활동을 활용합니다.

**추천:** IEP 팀 회의에서 제공하기로 결정한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입니다.

**재평가:** 장애 학생을 위한 갱신된 평가를 의미합니다. 학생의 교사, 학부모 또는 학군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는 학교 및 학부모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에 1회 이상 실시될 수 없습니다.

**의뢰:** 학생이 장애를 갖고 있는지 여부 및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 및 배정 절차의 시작;

**관련 서비스:** 장애를 가진 학생의 학교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 및 보조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반드시 IEP에 추천되어 개별적 또는 5인 이하의 그룹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관련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학교 보건 서비스, 청각교육 서비스, 작업치료, 물리치료, 스피치/언어 치료, 시각교육 서비스, 방향 및 이동 서비스 및 "기타 지원" 서비스.

**요청된 검토:** 학생의 필요가 지속적으로 충족되는지 결정하기 위한 IEP 검토를 위한 IEP팀 회의. 학부모, 교사, 기타 학교 교직원이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피치/언어치료:** 아동이 소리 및 언어의 이해 (청각 처리), 표현 및 음운 스킬, 이해, 통사론, 활용론, 발성, 유창성 등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12개월 학년도 서비스 (연장 학년도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12개월 학년도 서비스는 7월 및 8월에 발달 수준의 상당한 퇴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 중증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반드시 IEP 팀에 의해 추천되고 IEP에 명시되어야 하며 유아원 학생의 경우 CPSE가 반드시 이러한 추천을 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반드시 연장 학년도 서비스에 동의해야 합니다.

**시각 교육 서비스:** 시각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학습적, 사회적, 언어적, 생활조절기술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점자(Braille), 네메쓰 코드(Nemeth Code: 수학과 과학 등에 이용되는 특수 점자), 큰 활자, 광학 및 비광학 시력 교정 기기의 이용법과 읽기 쓰기 및 촉각, 시각 및 청각 기능을 이용하여 정보를 습득하는 법을 지도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